

미국의 아동·보호시설내 성폭행(CAS/OHCCS)¹⁾ 수사 절차

김 동 승 訳
(치안연구소 경감)

I. 서 설

이 자료는 미국보안관 협회(The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연구 개발과에서 작성한 아동성폭행 책자 중 아동위탁 보호시설 내에서의 성폭행에 대한 전문분야 협력팀(MDT : multi-disciplinary team)²⁾에 의한 수사절차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주 및 시당국의 보호시설내 성폭행 수사를 위한 성문의 지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보호시설내 성폭행 수사는 범죄의 성(性)적 성격, 주위환경, 증거수집의 어려움, 피해자의 지연령등으로 인해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수사는 주의 깊게 계획되고 조정된 대처가 요구된다.

- 1) 아동 위탁 보호시설내 성폭행(CSA/OHCCS: child sexual assault in out-of-home child care settings) : 사설탁아센터, 가정내 탁아, 양육가정(foster care), 치료센터(treatment), 구금시설 (detention facilities) 등에서의 아동성폭행, 학대 또는 착취를 뜻함. 이하 보호시설내 성폭행이라 약칭함.
- 2) 전문분야 협력팀 (MDT : multidisciplinary team) : CSA/OHCCS 사건을 협력 조정하여 수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팀으로 2개의 레벨을 갖는다
 - a. 예비수사팀 (preliminary investigation unit) : 법집행관 1명, 아동보호 복지기관 근무자 1명, 지방 관허 기관 대표자 (local licensing agency representative) 1명 및 검사 1명으로 구성된다. 법집행관과 아동보호 복지기관 근무자는 최초로 성폭행 신고에 응답하여 수사절차를 개시하며, 검사와 관허기관 대표자는 시안에 따라 최초의 관여 정도가 결정된다.
 - b. 정규팀(full team) : 정규팀은 법집행기관, 아동보호 복지기관, 검사실, 주 또는 지방관허기관, 주(州) 검 사실, 지방병원, 정신건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등에서 나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규팀은 모든 예비 수사정보를 검토하고 수사의 진행과정,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 및 기관 책임에 관하여 조언한다.

II. 수사계획 및 준비

기초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수사팀은 신고 당사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신고된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더 이상의 학대와 정신적 상처로부터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범죄자(증거를 없앨 기회를 가질지도 모를)에게 경고를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심의 초점은 항상 피해자를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신고자와의 접촉

가. 예비수사팀 (법집행관, 아동보호기관 근무자, 관허기관 대표자 및 검사로 구성)의 한명이 다음의 사항과 같은 기본정보를 얻기 위해 신고자와 접촉하여야 한다.

(1) 신고이유

(2) 사건의 세부 사항 : 아동이 사건에 대해 털어놓은 대상인물 및 그 장소, 아동의 사용단어, 아동에게 질문된 사항 및 아동의 정서적 상태

(3) 범죄의 장소, 날짜 및 시간

(4) 성폭력의 성격(신고된 범죄, 비밀 또는 강제 개입 여부, 접촉빈도, 폭력의 정도)

(5) 목격자의 신원

(6) 신고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기간

나. 유의사항

(1) 보호시설내 성폭행이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배경조사나 다른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특정되고 확인된 정보를 많이 입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인정 등의 배려를 해주어야 하며, 수사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한 염려를 제거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사관은 신고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또한 피해자 가족이 그러한 신고서를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자에게 최종사건 처리결과가 통보된다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2. 검토과정 및 우선순위 평가

가. 예비 수사팀은 모든 예비정보를 검토하고 수사전략을 계획하여야 한다. 예비정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열린마음(open mind)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피해자의 안전

(2) 수사의 우선 순위

- (3)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시간 및 장소
- (4) 사건이 발생한 경위, 시간 및 장소
- (5) 용의자
- (6) 복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일 가능성
- (7) 범죄 이후 경과된 시간(증거 수집목록 및 정보의 선도(鮮度) 결정을 위해)

나. 예비정보가 평가되고 수사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면담(interview) 과정이 시작되어야 하며, 수사계획은 아동이 면담 받는 회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Ⅲ. 탁아시설에서의 성적 학대 유형

수사관들이 탁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학대 유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Charles Wilson과 Susan C. Steepe는 탁아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7가지 성적학대 유형을 밝히고 있다.(수사 예비단계에서는 이들 중 어떤 유형이 발생했는가를 평가하기 힘들 것이다)

1. 탁아시설 직원간의 성적 행위

이런 유형의 행위는 성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면전에서 고의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아동성적 학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아동들간의 성적 행위

이것은 정상적인 성유희(sex play)나 신체 부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수사관들은 직원이 아동들의 행위를 선동하는데 역할을 하였는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소홀의 문제도 수사관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3. 탁아소 밖에서의 직원에 의한 아동과의 성적 행위

수사관들은 탁아시설 내에서도 추가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성적행위가 확인되면 탁아시설 내의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4. 탁아시설에서의 한 성인과 한명 이상의 아동과의 성적 행위

가해자는 대개 아동들과 부정기적인 접촉을 갖는 성인(예를 들어 직원의 친척)으로 대개 성적행위는 애무에 제한되지만, 그 이상의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성(secrecy)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5. 탁아시설에서의 한 직원과 한명 이상의 아동과의 성적 행위

가해자는 아동과 정기적인 접촉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학대가 정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6. 탁아시설에서의 2~3명의 직원과 수명의 아동간의 성적 행위

이런 유형은 탁아센타 (가정내 탁아와 대조되는)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아동들이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탁아센타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만나보는 것이 수사에 유용하다.

이러한 성적행위는 애무로부터 전적인 성교에 이르기까지 성적행위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대개 아동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위압이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포르노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탁아시설에서의 수명의 (혹은 전)직원과 다수의(혹은 전)아동들과의 성적 행위

Finkelhor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복잡하지만 발생가능성은 적은 사건 유형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성적 학대에 참여했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학대는 탁아시설 내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지며, 아동피해자들 간에 서로 성적행

위를 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적행위가 대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가해자들이 아동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성적 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진행된다.

신비스럽고 의식적인 행위들이 학대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아동포르노의 가능성이 종종 거론되며 또한 실제로도 발생하였다.

IV. 아동 성적 착취

성적착취(sexual exploitation)는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와 아동섹스링(child sex ring)으로의 발전까지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1. 아동포르노

아동포르노는 아동 성적 학대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성적 이미지(image), 목소리 또는 육필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성적행위에 대한 아동의 억제심을 낮추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아동포르노는 두가지 하부유형으로 분류된다.

Commercial : 상업적 판매를 위해 제작되고 의욕된 것

Homemade : 당초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

수사관들은 연방 및 주(州) 아동포르노 관련법규에 정통하여야 한다.

2. 아동섹스링

아동섹스링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가. 솔로섹스링(solo sex rings)

복수의 아동을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학대하는 한 성인(주로 남자인) 범죄자로 구성된다.

나. 전이 섹스링(transition sex rings)

복수의 성인 가해자와 복수의 아동피해자(주로 청소년들)로 구성되며, 참여자간에 아동포르노나 춘화(erotica) 같은 품목들이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연루된 청소년들은 대개 유괴되었거나 가출 청소년 또는 가정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종종 아동 매춘 또는 연합섹스링(syndicated sex rings)에 연루되기까지 한다.

다. 연합섹스링(syndicated sex rings)

복수의 성인 가해자와 복수의 아동피해자(대개 청소년)로 구성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단체이다.

아동포르노나 춘화 같은 품목들이 섹스나 다른 품목과의 교환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섹스단체는 거래품목, 유통방법, 공급책 및 배포책, 자기통제 매커니즘, 교역인 체제(a system of traders) 및 이윤동기를 개발하여 왔다.

3. 보호시설내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성적 착취 사건

가. Finkelhor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착취와 연루되지 않았다.

케이스중 21%에서 아동이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되었으며, 14%에서 포르노 제작이 추정되었고, 13%에서 마약사용이 추정되었다. 13%에서 의식적인 학대(ritualistic abuse)가 가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연구자들과 임상 의들은 아동성적학대의 발생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4. 성적학대의 증거

성적 학대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가. 포르노 품목

아동들의 사진, 음화(negatives), 슬라이드, 또는 잡지기사(광고), 아동들의 영화, 비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 테이프, 아동 육필의 노트

나. 에로티카(erotica : 어떤 대상인물에 있어서 성적 용도로 작용하게 되는 아동과 관련된 일체의 물건)

장난감, 게임, 기념품 및 복장, 그림, 공상저술(fantasy writings), 일기

V. 비밀스럽고 의식적인 행위

가장 심각한 대량 추행(mass molestation) 사건들 중 몇 경우에 있어서 아동들은 "의식적, 신비적"이라 명칭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진술을 하는데, Finkelhor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 케이스 중 83%에서 한사람의 가해자만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수의 가해자가 연루된 상대적으로 몇 안되는 케이스는 매우 심각한 경우였으며 포르노와 의식적인 학대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비적 또는 의식적인 사건에서 종종 지적되는 행위들은 작은 짐승제물(특히 고양이), 인간 제물(human sacrifice), 그룹섹스 및 수간예의 참여, 피 또는 노를 마시는 것, 찬가 부르기 등을 포함한다.

1. 신고단계에서 유의사항

아동 피해자들이 이상스럽게 들리는 고소를 할 때, 그들에 대한 신뢰성이 종종 감소된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러한 고소를 무시하지 말고, 아동들이 위에 기술된 것과 같은 기괴한 행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사관들은 다음의 아동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탁아 시설로부터 다른 장소를 옮겨졌다고 언급하는 아동들
- 포르노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다고 언급하는 아동들
- 신비주의와 연관된 상징이나 소품(예를 들어 5각형, 5성표시, 반달, 촛불 또는 오욕된 종교적 물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아동들.

2. 수사단계에서 유의사항

수사관들은 주의 깊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아동의 증언을 입증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들을 평가하고 지도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탁아시설에서의 아동 성적 착취나 신비적 행위에 대한 용의점이 있는 경우에 MDT 수사관들은 즉시 버지니아주 Quntico주재, FBI아카데미, 행동과학부서(Behavioral Science Unit)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VI. 수사의 요소

1. 보호적 구금(protective custody)

수사관들의 첫 번째 관심은 아동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여야 한다. 철저한 신체검사를 위

해 아동을 병원(가능하면 아동성폭력 검사에 관한 확립된 전례가 있는)에 데려가야 한다.

신체검사 후에는 예비수사팀은 아동의 당면한 신체적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아동이 더 이상의 폭력의 위협하에 있으면, 그 아동은 보호적인 구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폭행이 양육가정(foster care setting), 그룹홈(group home) 또는 주거시설(residential facility)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동을 가해자와의 더 이상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적 구금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성폭력이 사설탁아 시설에서 발생하였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보호적 구금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

2. 부모의 염려에 대한 대응

가. 수사관들은 범죄 및 그것이 공개될 경우 아동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나. 수사가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가는 부모들의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부모들이 아동과 수사관에 대해 지원적일 수 있고, 과도히 수사에 연루될 수도 있으며, 또한 공공연히 적대적으로 될 수도 있다.

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동이 성적으로 피해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다양한 방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분노, 죄의식, 슬픔, 수치 또는 부정이 그러한 폭로에 대한 부모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라. 부모들은 사건을 합리화하거나, 사실을 듣기 피하거나, 폭행을 낮추어 보거나 다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마. 어떤 부모들은 사건에 대해 자책하거나 경찰, 사회복지 기관 또는 성폭행이 발생한 탁아시설 등에 책임과 분노를 돌리게 된다.

바. 어떤 부모들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대응에 반감을 갖고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이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수사 및 기소에 연루되고 아동과 가족의 신원이 밝혀지고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 피해 아동 부모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사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 피해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행의 폭로는 신중해야 한다.

-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은 수사의 모든 측면 및 그것이 자신들 및 아동에 대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가정들을 위하여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 정신적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즉각의 치료적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 수사관들은 부모들의 염려사항이나 수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여야 하

고 부모들에게 정직히 대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다음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 당황하거나 소문에 과도히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 자신들의 자식에 대한 염려 및 그들의 분노, 좌절 및 외로움에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

3. 탁아시설과의 접촉

가. 탁아시설의 장(長)은 수사의 통보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 자신이 연루된 증거가 있거나 증거오염(evidence contamination)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관들은 지방법원에 소환장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탁아시설에 대한 차후의 접근을 어렵지 않게 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수사관들의 탁아시설 직원들에 대한 최초의 접촉은 가능한 직업적이고 비비난적(non-accusatory) 이어야 한다.

다. 탁아시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몇가지 사항들을 예상하여야 한다.

- 어떤 시설의 장(長)도 수사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 만약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수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

관들은 직원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사건이 직원의 시각 밖에서 (낮잠시간이나 운행도중 등) 발생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가능하다면 수사관들은 학급 및 그룹명단, 주간활동 일정, 용변, 낮잠 및 옷차림 같은 일상적인 사항의 감독에 대한 정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기록사항 그리고 가해자의 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가해자에 대한 수사

가. 용의 가해자의 아동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수사관들은 다음의 사항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아동 성폭행자들은 거짓말 테스트 통과율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관들은 거짓말 테스트 결과만을 가지고 성폭행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동료근무자, 가족 및 친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혐의를 믿을 수 없으며 수사를 방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 Finkelhor의 연구에서 여성이 가해자의 40%를 차지하였다(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것보다 한층 높은 비율임) ; 따라서 여성이라고 용의자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나. 복수 가해자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복수 피해자 흐름도(flow chart)와 가해자 흐름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때로는 성폭행 연루자들이 공모 단결하여 수사를 어렵게 한다. 수사관들은 철저한 배경 체크와 여러 수단을 통하여 추정되는 이 들에서 약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여 그사람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다.

5. 정보에 대한 검증

가. 최초의 정보를 얻은 즉시 예비 수사 팀은 그 정보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비록 이 시점에서 용의 가해자가 이미 감금된 상태 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나. 검사는 범죄의 모든 요소가 다루어졌는지, 어떠한 법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확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그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절차 및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심층적 검토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규 MDT에 회부된다.

VII. 증거수집

1. 증거수집 및 수색영장 이용

가. 보호시설내 성폭행 사건은 증거확보

가 어렵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간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힘들다.

나.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할때 항상 수색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만약 거부되면 수색영장을 얻어야 한다.

다. 면담과정 동안 수사관들은 물질적 증거의 존재여부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색영장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신속하여야 한다. 타이밍이 영장집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라.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관은

- 영장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수색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를 현장에 혼자 남도록 해서는 안된다.

마. 만약 수색 동안에 추가적인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그러한 증거는 즉시 압수되어야 한다.

바. 발견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정확히 어떤 증거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도록 정확하게 라벨을 붙여서 보관하여야 한다.

사. 증거로 압수된 포르노 물품들은 수사에 공식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져서는 안된다. 그러한 물품은 다른 증거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증거원(證據源)

증거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수사에 유용하다.

- 시설배치 사항: 예를들어 용변장소, 사무실 또는 밀실
- 피해자 및 또는 목격자의 구두 설명
- 피해자 및 용의 가해자의 신체적 및 감정적 반응에 대한 관찰
- 피해자의 부상 사진
- 물적증거 (음모, 피해자 또는 용의자의 옷에 있는 혈흔, 피해자의 입, 생식기 또는 옷에 있는 정액 등)
- 강간 증거 키트 (rape evidence kits)
-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에 대한 사진, 음화(negatives), 미현상 필름, 비디오, 홈무비
- 포르노 필름, 그림, 잡지, 비디오 등
- 나체화
-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그린 아동의 그림
- 성적 보조 기구
- 피해자가 묘사하는 어떠한 특이한 물품 (가구, 그림, 옷, 유행제 등)
- 탁아시설 직원 사진
-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VIII. 특별 고려 사항

예비수사팀은 용의자에 대한 미란다(Miranda) 경고에 관한 관련 판례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수사상의 장애나,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사상의 장애

가. 보호시설내 성폭행 수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좌절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탁아시설이나 부모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 그러한 장애가 발생할 때, 수사팀은 창조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나. 수사상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테크닉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용의 가해자에 대한 내밀한 감시(undercover surveillance)
 -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요금, 전화, 차량국, 부동산 거래 및 민·형사 기록 등과 같은 공적 기록의 이용
 - 도청 또는 위장 비디오 카메라 설치를 위한 법원 명령서 확보
 - 철저한 배경 체크를 통한 모든 구술 증거의 확증
 - 911 신고 태잎의 확보
 - 용의자에 대한 거짓말 테스트
 -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
 - 아동과의 면접에서의 아동그림의 이용
 - 가해자의 생식기 부분을 사진촬영하기 위한 법원의 "구금명령(detention orders)"의 이용 (일부 주는 증거수집 절차의 일환으

로서 그러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이방법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가해자의 생식기 부분을 묘사할 경우 특별히 유용하다

• 탁아시설을 거쳐간 학생들의 명단 작성 및 그들과의 면담 요청. 이러한 면담이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규 MDT와 철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가. 예비 정보에서부터 최종보고서까지 수사의 각단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아동의 반응을 기록할 때 수사보고서에 아동의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수사관들은 아동의 본래 진술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종종 어른들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보호시설내 성폭행 수사에 특유한 보고서 양식을 고안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4. 지속적인 수사

가. 수사의 각단계 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검사의 조정하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예비수사팀에 의해 나중단계에서는 정규 MDT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나. 수사 중단이 결정될 경우 사건의 차후의 변동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나 관련 가족들에게 사회복지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5. 기타

종종 스트레스가 보호시설내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MDT요원들에게 문제가 된다. 수사관들은 아동들이 신뢰하는 어른들로부터 힘없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안정을 잃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범죄의 심각성 또는 희생자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할 수 있으며, 기관의 행정가들은 아동 성폭행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관들의 좌절감을 인식하고 수사관들이 그들의 느낌을 토론탈기를 원할 때 그러한 매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

IX. 거주시설(Residential Placement)³⁾내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고려사항

3) 거주시설에는 치료센터(treatment centers), 임시 및 장기 피난소(temporary and long-term shelters), 구금 시설(detention facilities), 그룹 홈(group home) 등이 포함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고려

거주시설에 있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수사관의 관심은 단순히 아동을 더 이상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피해자는 종종 학대당한 경력이 있고 거주시설에 머물 치료적 필요를 지니고 있으며, 종종 초반의 요란한 수사 후에 아동은 혼란에 빠진 채 버려지고 아동의 미래는 다루지 않게 된다.

MDT는 피해자의 단기적인 필요를 다루어야 하며 장기적인 정신건강 필요를 확인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2. 장·단기별 배려

단기적으로 응급대응(emergency response) 및 보호, 현재의 정신 건강상태 평가, 아동의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의 동원, 아동에 대한 수사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과거 경력 검토, 장기 에 걸친 아동 행동의 모니터링, 차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아동을 준비시키는 것, 아동의 주거, 학교, 교통 또는 재정적 필요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X. 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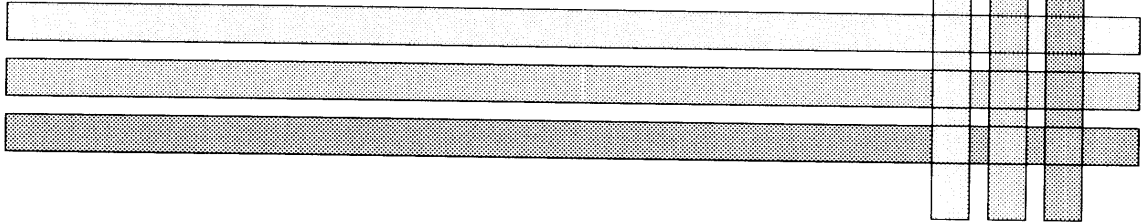
보호시설내 성폭행 사건의 수사관들은 연루된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보호시설내 성폭행 수사는 관련되는 모든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수사관들은 아동 위탁·보호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의식적 또는 신비적 행위를 포함한) 성폭행 유형을 이해하여야 하며, 아동 피해자의 안전 및 복지에 주된 관심을 두고 그의 장·단기적인 필요를 평가하여야 한다.

● 치안연구소식

연 구 소 동 정
치안시책 및 법제동향



연구소 동정

□ 치안정책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6월 1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제4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경찰의 신뢰성 확보와 Police Line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송대희 국민경제연구소장 및 이황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서울대 정정길교수가 ‘21세기를 대비한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2주제로 중앙대 김유환교수가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Police Line 도입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백남치 신한국당 의원, 유승삼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종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하중 서강대 교수, 이상안 경찰대 교수, 박동주 경찰청 정보3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 정정길 교수는 21세기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경찰업무의 특성에 따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약하는 요인을 개괄한 후,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정책결정주체로서의 독자성 확보, 둘째, 개인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관리방식의 혁신, 셋째, 분배정책적 서비스의 개발등 정책집행 전략의 변화,

넷째,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직업윤리의식의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중앙대 김유환 교수는 Police Line의 개념 및 미국에서의 운용실태와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규정 및 문제점을 도출한 후, Police Line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96 치안정책용역연구자 선정

지난 3,4월 중에 학계인사 및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용역연구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총 43개과제 62건의 연구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의원등이 참여한 용역연구심사위원회에서 4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수사경찰의 자질향상과 인권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응모한 연세대 장동진교수등 11명(10건)이 '96년도 용역연구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들은 해당과제에 대하여 현재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3월말 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 치안논총 및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치안논총 제12집과 연구보고서 11권을 발간하였다.

치안논총은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개발’, ‘경찰업무 전문화를 위한 자격정책방안 연구’,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서별 기능별 장비보유 모델 개발’등 각 분야별 논문 5건을 묶어 1,600부를 발간하였으며, 연구보서는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 연구’등 11건의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로서 총 9,600부를 발간하여 각급 경찰관서 및 도서관,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 연구실장 인사발령

7월 8일자 경찰청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연구실장의 이동이 있었다.

전 치안행정 제2연구실장 하만정 총경은 경찰청 보안1과장으로, 전 범죄대책연구실장 한병락 총경은 경기 안성경찰서장으로, 전 과학기술개발연구실장 김부욱 총경은 서울 제1기동대장으로 각각 전보발령되었으며, 범죄대책연구실장으로 김영화 총경(전 전남청 교통과장), 과학기술개발연구실장으로 최병일 총경(전 경기 연천서장)이 각각 부임하였다.

치안시책 및 법제동향

□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관서 신설 및 인력증원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등 직제를 개정하였다.

치안수요증가지역에 1개 경찰서(수서, 건물미완공으로 개서는 지연)와 18개 파출소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지역 일부파출소의 3교대 근무 확대실시와 수사력 보강 등을 위해 67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승진적체를 완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1급지 경찰서 일부과장, 경위계장 및 경사이하 조사요원 등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16, 경감:+40, 경위:+30, 경사:-121, 경장:-18) 하였다.

이밖에 과천, 안양, 군포 등 일부경찰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치안수요 변화에 부응토록 하였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치안부담이 과중한 신도시지역 등에 경찰서 3개소, 파출소 43개소의 신설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관할인구·면적 등 치안여건을 면밀히 검토, 100여개의 파출소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13개 지방청과 144개 경찰서 등 총 157개 관서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상담실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하고 전문상담능력을 갖춘 여경을 배치토록하여 성폭력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키로 하는 한편,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6대도시 경찰서에서 실시중인 성폭력상담전화(경찰서 대표국번+0118) 전용회선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 설치, 연중무휴로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파출소별로 관할구역내 소년가장을 일제히 파악, 방법순찰활동시 수시로 심방활동을 벌여 성폭력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육성회 회원이나 독지가들과의 결연도 적극 추진 하고 있으며, 이밖에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과자들의 동향관찰을 강화하고 도피중인 수배자들에 대한 특별검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펴고, 비디오방 및 만화가계의 불법영상물 대여나 관람행위를 철저히 단속, 유해업소를 정화하고 근린공원이나 고수부지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학원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 경찰서 단위로 학교담당경찰제(4,582개교 9,370명)를 운영하고 학교주변 통학로 등 취약 지역에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파출소에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시·군·구」에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학교·민간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학교내외의 폭력근절대책 추진과 비행청소년 등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중이다.

□ 공기총 임시 영치 추진 중

경찰청은 불법개조, 용도의 사용등으로 강력사건·사고의 도구로 악용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구경 5.5mm공기총을 임시영치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총을 불법개조하거나 조준경을 부착사용할 때는 원거리 저격이 가능하여 조직폭력배나 우범자가 공기총으로 무장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협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 96년 7월 1일 현재 공기총 소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난·분실된 총기는 총 7천3백13정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기총으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경 5.5mm 공기총에 대해 전체소지 공기총 54만4천 9백74정의 90.7%에 해당하는 49만4천4백91정의 방아틀몽치를 임시영치키로 했다.

그러나 수렵기간 및 유해조수구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기간에는 적법절차만 거치면 항상 공기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치해제에 따른 번거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치장소는 소지자의 주소지 관할 파출소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총을 소지한 사람은 7.20 ~ 9.20일 까지 공기총의 방아틀 몽치를 영치해야 하며 명령을 위반하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교통민원행정 개선

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민원 행정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아원과 초등학교 등하교 차량을 통학버스로 지정하여 특별보호하

고, 유아동승시 유아보호장구 및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와 맹인, 지체장애인이 차도를 통행할 시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고객지향적인 운전면허행정을 위해 2종 보통운전면허에 자동변속차량(Auto)면허를 신설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이밖에 PC통신 등을 통해 별점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면허시험장에 민원인 대기표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교통단속의 합리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위해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즉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하는 한편 중장비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음주운전시 처벌근거가 없었던 맹점을 시정하고, 교통사망사고 야기자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간소화

— 물피 80만원 미만 사고 구비서류 축소 —
80만원 미만의 단순물질피해 교통사고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고 있음에도 사망사고와 같은 다른 교통사고와 똑같이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관과 국민 모두에게 불편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을 대폭개정하여 시행중으로 단순대물피해 80만원 미만 사고에 대해서 기존 보고서 8종을 5종으로 3종을 통합하고 조사항목 1백51개항 중 34개 항목을 축소 조정하여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용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건당 1시간정도 줄어들게 돼 교통사고 당사자가 사고처리를 위하여 경찰서에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여 단축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해경소속 경찰공무원은 계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해양경찰청장도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게 된다.

□ 개정형법 주요골자

형법이 95.12.29 법률 제5057호로 공포되어 금년 7.1부터 시행중으로 개정형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먼저 「총칙」과 관련하여

• 재산형의 화폐단위를 에서 원으로 수정하고 벌금을 5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

편 각칙을 통해 현행 30만원이하부터 300만원이하인 벌금을 200만원 이하부터 3,00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였다.

이에따라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경우 종전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1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20배, 일반 교통방해는 2백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 상습도박·도박장 개장은 2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 공무원 자격사칭은 60만원 이하에서 7백만원 이하 등으로 각각 개정되었다.

· 이밖에 총칙에서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제도(59조의 2),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62조의 2)가 도입되었다.

○ 「각칙」에서는
신증범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컴퓨터 관련 범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기(제347조의 2), 업무방해(314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 및 동행사(제227조의 2 및 제232조의 2)등 컴퓨터 관련 범죄를 신설하고 재물손괴죄 등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위의 객체로 추가하였다.(제228조, 제229조, 제234조, 제316조, 제323조, 제366조 등)

〈민생치안관련 범죄(인질관련범죄신설 등)〉

약취강도죄의 죄명을 인질강도로 변경하고, 체포·감금·유인을 行爲態樣으로 추가(제336조)하는 한편 사람을 인질로 삼는 권리행사방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인질강요죄(제324조의 2),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 3),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 4)를 신설하고

被略取誘引者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324조의 6) 하였다.

〈기 타〉

강제집행으로 明渡 또는 引渡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경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제14조의 2)와 가스, 전기, 방사선 등을 방류하여 생명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조항 신설(제172조의 2)하고

인지·우표위조죄 등에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위의 객체로 추가(제218조~제222조)하였다.

이외에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보는 규정(제237조의 2)을 신설하고

자동차 등을 일시 불법사용한 경우(제331조의 2)와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부정이용의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제348조의 2) 하였다.

또 법정형을 조정하여

〈사형의 삭제 추가〉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

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강도치사죄 등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한편, 신설된 강간살인죄에서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징역형 조정〉

존속살해죄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형으로 추가하고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한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징역형 상한을 완화하고, 공문서위조죄 존속상해죄 등에서 징역형의 하한을 완화하였다.

〈선택형으로서의 벌금형 추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조인지·우표취득죄, 위조통화의 취득,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등위조·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에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였다.

〈결과적가중범의 치사와 치상의 법정형 차등화〉

유기등 치사상, 체포 감금치사상, 약취 유인치사상, 강간등 치사상, 건조물파괴치사상,

가스 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상, 교통방해치사상, 음용수혼독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 결과적가중범을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분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 과실범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등 죄의 과실범과 업무상과실·중과실범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용어 표현의 정리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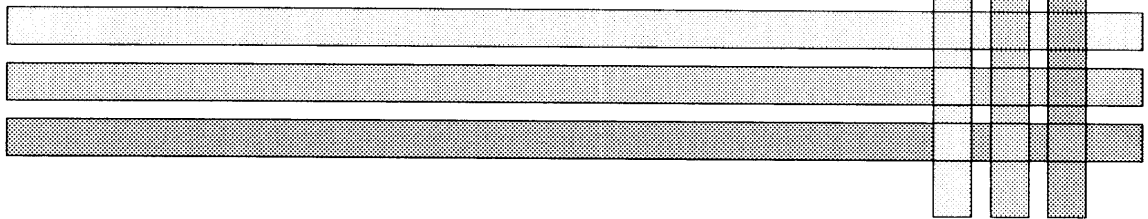
· 章 및 條의 제목중 일부를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조문의 표현중 어려운 한자 등을 쉬운 용어로 일부 수정하고, 조문의 표현 등을 정리하였다.

예컨데 결과적 가중범에서 "치상한"을 "상해에 이르게 한"으로, "치사한"을 "사망에 이르게 한"으로 변경하고

제14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에서 "타인이 간수하는"을 "타인이 관리하는"으로 변경하였다.

● 현 장 제 언

경찰에 바란다
내가본 일본치안, 일본경찰



경찰에 바란다¹⁾

우리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범죄를 척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일 것이다. 모니터 결과에서도 경찰에 가장 바라는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검거 48.4%,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37.8%, 친절봉사 17.0%, 교통안전과 소통 5.8% 순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에 이왕이면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기분 좋고 친절하게 해주면 하는 바램일 것이다.

모니터¹⁾ 결과에서도 경찰관의 민원응대가 불친절했다고 응답하거나 답하지 않은 17.6%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 불친절하거나 언어와 태도가 불성실해서라는 응답이 35.7%에 이르고 있다.(무응답 50%)

사소한 문제라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가 경찰에 대한 인상을 결정지워 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치안모니터가 설문에 답하는것 이외에 임의로 경찰에 바라는 바를 적은 것을 전재하고자 한다.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의견이 없으며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채찍에 다름아닐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법집행을

경찰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1차적인 법의 집행자로서 경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정착될 때 국민과 경찰과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박영대/남/39세/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 박영의/여/50세/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 윤선근/남/46세/전북 전주완산구 중노송동2가
- 변창익/남/50세/제주시 연동

1) 경찰청 공보관실에서 치안모니터 660명을 상대로 '96.3.20~4.20까지 31일간 우편조사를 통해 치안생정에 대하여 모니터한 결과를 발제하여 편집하였다.

경찰관들 사고의 전환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태도 여하에 따라 국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같은 기계적인 사고로 "법규에 따라" "전례에 따라" 처리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가능한 방향으로의 사고가 전환될 때 진정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정대근/남/52세/서울 송파구 문정동

권위있는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세워라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샷대질과 고함 등 거세게 항의하는데도 우물쭈물하는 나약한 경찰관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또한 권력있는 자들은 경찰관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경찰은 힘없는 서민에게만 권위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미국에서 살다 온 모니터로서, 경찰이 국민앞에 나약하게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경찰자신들의 반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홍대회/남/41세/경기 고양시 주엽동

경찰관의 자질향상

단속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음주운전사고, 절도, 강간, 살인 등의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경찰관의 자질과 사명감 결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경찰관으

로 입문하는 선발 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성이 있는 자들의 입문을 차단하고 경찰관들 각자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서울택/남/54세/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그만 친절이 경찰전체의 이미지를 바꾼다.

최근 카드분실로 경찰서를 방문한 일이 있다. 주말이라 은행에 신고하기가 힘들었고, 가까스로 신고를 하였으나 의심스러워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관이 자기일처럼 친절하게, 서울에 있는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분실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또한 위로해 주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선입견이 기우였음을 새삼 느꼈다.

· 이경주/여/25세/대전 동구 삼성1동

과감한 혁신으로 스스로 조직개혁을

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조직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 및 범인 체포 등에 있어서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여 적은인력,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등의 업무는 과감히 민간단체 등에 이관하는 등 방대한 경찰업무를 스스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 김일제/남/44세/경기 이천군 마장면

**청소년 탈선 조장하는 악덕업주 발본색원
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등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성인용 영화를 보는 것을 보면, 이런 유흥업소의 악덕업주들이 불량청소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들과 매일 생활하고 있는 학원강사로서, 지금까지 악덕업주들을 단속하였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발본색원 해야 할 것이다.

· 김순주/여/24세/전북 김제군 김제면 금구리

순찰차 속에서 잠을 자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순찰차량 경찰관들의 잘못된 모습이 자칫 전체 경찰관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가 뒷골목 등 한적한 곳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 경찰관의 모습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휴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 변종대/남/49세/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방안

최일선 경찰기관인 파출소에서 연간 4회 정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절별 방법요령이나 치안소식 등을 관내 전 가구에 지역 파출소장 명의로 배부하면 주민들과의 민경 친선

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오성대/남/58세/서울 송파구 방이2동

지역주민 회의에 관내파출소장이 참석을

아파트 지역에는 대부분 매달 1회씩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일반주택가 지역에서도 반상회 등 주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관할 파출소장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을 수렴하면 진정한 민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어호선/남/58세/경기 부천원미 중동

주민들에 실망주는 경찰모습 보이지 말자

어렵게 전화번호를 찾아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면, "우리소관이 아니다" "우리관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통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다든지, 불량청소년들이 우굴거리는 골목초소에 늘 "순찰중"이라는 뜻말이 걸려 있고, 새벽 5시 날이 밝았는데도 파출소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을 이제는 보이지 말자.

· 정상섭/남/69세/서울 양천구 목동

범죄현장 신고출동시 상황파악후 출동을

집근처에서 집단으로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들을 신고하자, "알았다고"한 후 5분쯤 후에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음주를 한 불량배들이 5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관들이 위압을 당하여 찢찢매는 것을 보았다. 신고접수시 자세한 상황을 묻고, 필

요한 인원을 출동시켰더라면 이러한 스타일 구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정준교/남/31세/서울 동작구 상도3

외근경찰관들에게 명찰 및 명함지급을

파출소 외근 경찰관들의 근무복에 명찰을 패용케 하면, 지역 주민들이 각종 신고시나 접견시 자연스럽게 담당 경찰관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정한 규격의 명함을 지급하면 각종 문의나 신고시 쉽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송연정/여/30세/서울 은평구 불광동
- 김치현/남/40세/부산 서구 동대신2가

파출소 직원들 얼굴을 익힐만하면 이동된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및 파출소장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서, 주민들이 얼굴을 익히고 어느정도 의사가 통할만하면 어느새 이동이 되곤 한다. 물론 장, 단점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장기간 근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택기/여/46세/서울 종로구 옥인동

분실장소를 모를 때는 어디에다 신고하란 말이나?

신분증과 현금이든 지갑을 분실하여 전주북부서 관내 파출소에 신고차 들른 일이 있다. 파출소 직원이 분실장소를 묻기에 "어디라고 대답하니까" 그곳은 전주경찰서 관할이므로 여기서 신고접수를 받을 수 없다가에, 그 곳

파출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귀찮은 표정으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지갑을 어디서 분실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럴땐 어디에다 신고하란 말인가?

- 나갑주/남/26세/전북 전주덕진 인후2동

경찰관들의 이런행동이 주민들을 실망시킨다

주택가 골목길을 거의 막다시피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몰려나와 불평들을 하고있을 때, 마침 순찰차량이 오고 있었다.

주민들의 생각은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믿었으나, 그런 상황을 보고도 남의 일인양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다.

자기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이 주민들을 실망시킨다.

- 이은혜/여/35세/인천 북구 작전1동

교통단속 및 사고조사의 과학화로 대국민 마찰소지 줄여야

경찰업무중 국민과 마찰이 가장 많고, 또한 불신을 받고 있는 업무가 교통단속과 사고조사라고 본다.

고속도로 및 각종 지방도로에서의 과속 단속 및 조사자 주관에 의한 사고조사 등 국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 민주경찰의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한다.

- 전도일/남/50세/강원 강릉시 포남동

경찰시책 시행전에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이사후 일정 기간내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불이행에 대하여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관청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시행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시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 권용문/남/36세/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레커차가 도착하고, 그다음 119구급차가 도착, 마지막으로 경찰 순찰차량이 도착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인 경찰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김주덕/남/47세/경북 영주시 가흥2동

면허시험장 직원들 친절한 민원안내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짜증도 나겠지만, 공무원들은 각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자기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친절히 안내해 주기 바란다.

• 김재기/남/37세/경기 화성군 태안읍

대형차량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야간이 되면 대형트럭들이 도로변 곳곳에 상습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영업용 트럭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 야간의 교통사고 및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견인이 불편해서 그런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다.

• 황준호/남/38세/경남 울산 농소

교통경찰관들의 자가용 동승행위 보기 않좋아

교통의경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아침, 저녁이나 특별단속 등 근무를 마치고 철수시 목적지 방향으로 가는 자가용차를 세워서 동승을 요청할 때, 운전자로서 거절하기란 어려운 입장이다. 물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이 경찰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 권영주/남/43세/경남 장승포시 옥포2동

음주운전 단속을 종이컵으로 해서야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과연 우리가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이컵으로 냄새를 맡아보고, 얼마나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운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 김현희/여/22세/전남 와도군 군외면

합정단속은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높인다.

운전을 하면서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찰관이 으스스한 길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위반자가 더 나쁘겠지만, 이는 경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당당하게 예방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

· 김성준/남/40세/서울 강남구 대치3동

교통의경들에 친절히 교통단속토록 교양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경찰관들은 어느정도 친절할 편이나, 교통의경들의 대민처우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압적인 자세 및 반말 비슷한 통명스런 말투로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가끔 목격한다. 전체 경찰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반복적인 교양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남현미/여/32세/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학원주변 배치경찰 원거리에도 배치를

지난 해부터 학원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에 경찰관들이 학교주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선도를 경찰관에게 떠넘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주변에 경찰관들의 배치로 불량학생들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들만의 아지트를 만든다는 말도 들리므로 원거리에도 경찰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최명환/남/37세/서울 노원구 하계2동

PC통신망을 이용한 지명수배 제도 활용을

국민들은 경찰관서 게시판이나 거리의 게시판들에 나붙은 경찰의 지명수배자 전단을 통하여 수배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수배자 신고에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PC의 대중화로 컴퓨터통신 이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통신망 운영측과 협약을 맺어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개설, 서비스하면 공개수배 효과가 클것이다.

· 최재민/남/26세/전남 군산시 창성동

범죄신고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각종범죄의 신고자나 목격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경찰관서에 출석하면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두한 신고자를 마치 피의자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외면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원인 아닐까?

가능하다면 출장조사를 바란다.

· 박종찬/남/35세/대구 동구 지묘동

이세상 어느직업치고 쉬운 것이 있겠는가?

회사 임원들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싸움에 관련되어, 피의자로 난생 처음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죄인들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이

해는 하지만, 형사들의 근무자세나 근무태도 등이 너무나 함부로여서 <죄송하지만> 상스런 사람들이란 생각까지 들었다. 경찰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나 이 세상 어느 직업치고 쉬운 것이 있겠는가? 옆에서 보니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건만 웬 사사로운 불만들이 그리도 많은지 듣는 사람들이 불쾌할 정도였다. 부탁하건데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할 말씨와 사건을 신중히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정훈/남/41세/서울 관악구 신림4동

망국병 도박행위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을

현재의 우리 사회는 가히 <고스톱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부끄럽지 않게 들릴 정도로 도박이 전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심지어 가정주부들까지 몇 사람만 모여도 고스톱이 기본적인 오락으로 자리잡는다. 농한기 시골등지에는 전문도박꾼들의 기승으로 패가망신, 자살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다. 국민정서와 국가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한국병 도박행위를 철저히 단속, 근절시켜야 한다.

· 박동희/남/62세/대구 남구 대명6동

내가 본 일본의 치안, 일본의 경찰¹⁾

김 석 기
(오사카 영사, 총경)

지난 2년간 일본에 와서 외국인으로서 같은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의 치안과 일본의 경찰에 대해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안정된 치안이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대로 치안이란 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본경찰은 전후 50년간 그러한 치안환경 만들기를 훌륭히 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치안과 경찰은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안과 경찰은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우선 세계 주요국, 주요 도시의 범죄지표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현저히 그 수치가 낮습니다. 이는 그 만큼 치안이 양호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동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351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치안과 경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거주 외국인들은 일본의 치안은 대단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 소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의 경우 80% 가까이가 자신의 모국과 비교해 볼때 일본은 안전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답변, 일본의 치안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본인보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자신이 외국인이니까 일본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1) 이 글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중인 김석기 총경이 일본의 한 경찰서에서 직장교육시간에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또한 질문속에 경찰관에 대한것도 있었습니
다.

- 일본의 경찰관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열
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 경찰관에 말을걸면 정중히 말을 들
어 주는가?

- 일본 경찰관에 부탁하면 어려운 것이라
도 해결해 주는가?

그들의 대답은 역시 친절하고 정중히 들어
주며 어려운일도 해결해 준다 라는 내용의 긍
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이 보더라도 일
본의 치안상태와 일본의 경찰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조사결과는 나타
내고 있습니다.

□ 양호한 치안상태 유지가 가능한 원인은?

그러면 일본의 치안과 경찰이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크게 네가
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국민
성, 사회환경,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협
력, 그리고 훌륭한 경찰제도 입니다.

첫번째, 국민이 어떤 국민성과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준법질서
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국인과 미
국인이 "분쟁해결지향형"임에 반하여 일본인
은 "분쟁회피지향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

습니다. 일본인은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 내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며, 서로가
마찰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회피지향적"인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는 법질서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결과적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분
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구
조야 말로 치안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일본의 사회환경도 치안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국민의 90% 이상이 스스로를 중
산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빈부
의 격차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공평함이 범죄심리를 해소
하는 커다란 요소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합니
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회구조
적으로 범죄가 많고 치안이 불안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경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작년('95
년) 6월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조직 또는 공공기관을 하나 들
어 보라고 말하니, 100명중 42명이 경찰과
검찰을 신뢰한다고 대답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1위였으며, 2위가 병원, 3위는 신

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 국민에게 했더니 1위가 교회, 2위가 병원, 3위가 학교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의 신뢰도가 높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군대가 1위, 경찰 검찰이 2위 학교가 3위 였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병원이 각각 1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이 경찰의 수고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찰을 신뢰하며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일본 경찰이 탄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일본경찰의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한국경찰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가 경찰에게 치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에 상당한 권한도 부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수사부문을 보면 한국경찰은 아직 독립수사권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적, 구체적 지휘권을 갖는다고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 체포장, 압수 수색영장 등의 청구권도 없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194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으로 경찰의 독립수사권과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점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50년전의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요인 경호업무는 전적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고, 정보업무도 다른 공안기관이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찰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면과 근무환경면을 보면, 우선 가장 훌륭한 점은 관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24만 경찰이 누구나 희망하면 정부에서 관사를 제공하여 주택문제를 일단은 해결하여 준다는 점입니다.

오사카의 경우 파출소 근무가 3교대제, 동경은 4교대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머지않아 3교대제를 도입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2교대 근무제, 즉 당번 비번의 격일 근무는 체력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찰은 일본경찰 만큼 근무환경은 좋지 않습니다만, 모두가 치안 유지라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치안상태도 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일본의 치안이 잘되고 있는 것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들이 비교적 공평한 사회환경속에서 생활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국가는 경찰에게 치안이라는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상응한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경찰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 일본경찰의 과제

그러나 일본경찰에도 과제는 많다고 봅니다. 총기발포사건과 외국인 범죄, 약물범죄 등의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기발포사건이 작년 한해에 16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94년에 비하면 81건이 줄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폭력단에 관계 없이 발생한 발포사건만해도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가 34명, 부상이 33명이나 됩니다. 물론 총기문제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도 많은 총기가 밀수입되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므로 총기발포사건도 점점 증가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범죄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94년 현재 외국인 입국자수는 383만명(영주자, 주일미군등은 제외)으로 최근 10년간에 70%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95년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만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불법취업과 불법 입국관련 브로커 조직의 존재, 주민들과의 마찰 발생 등 사회문제가 되

고 있고 특히,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최근 10년간만해도 8배 이상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약물 범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로뽕, 대마, 마약 등 전체적인 약물사범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고,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일본도 약물범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죄는 이른바 선진국형 범죄인 동시에 국제성 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국제화에 수반하여 아무래도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찰협력의 필요성이 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폴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간의 경찰관의 인적교류 확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관서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1시간 30분의 거리입니다. 오전중에 오사카시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점심을 서울에서 먹을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간부가 일본 경찰대학에 유학 오듯이 일본 경찰간부도 한국 경찰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경찰은 우리 모두의 인생

나는 항상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을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나 동료들에게도 경찰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제가 경찰제복을 입은지 만 17년이 되었습디다만, 만약 앞으로 10여년은 더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이 30년 가까이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찰관의 재직기간이 30년 전후라고 볼 때, 인생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 30년을, 그것도 가장 힘있고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제복을 입고, 경찰조직에 몸담아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순간, “나의 인생은 정말로 만족했다”고 말하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죽을때에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

약 내가 죽을때까지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는다던가, 경찰이 직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을 빛내기 위해서도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아빠가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경찰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후배들을 항상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 나의 세대에 해결 할 수 없는 과제를 후배들이 노력해서 해결하고 경찰을 빛나게 해 준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세계의 경찰은 같습니다. 우리들의 경찰을 위해서 상호간 열심히 노력합시다.

치안연구소 연구자료 안내

<p>95-01 외사경찰의 국제화 전략</p> <p>95-02 운전면허 관리제도 개선</p> <p>95-03 교통경찰 행정의 발전방향</p> <p>95-04 교통사고처리의 신뢰성 제고방안</p> <p>95-05 음주운전사고대책과 처리시스템 확립방안</p> <p>95-06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p> <p>95-07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p> <p>95-08 경찰장비관리운용 실태분석</p> <p>95-09 경찰관 사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p> <p>95-10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 강화 방안</p> <p>95-11 자동차보험제도 개선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p> <p>95-12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 고찰</p> <p>95-13 경찰에 있어서 위성통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p> <p>95-14 언어를 통한 경찰이미지 개선방안</p> <p>95-15 교통감시 및 통제를 위한 화상감지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p> <p>95-16 생물학적 증거물 채취KIT개발</p> <p>95-17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활용방안</p> <p>95-18 경찰관 성과평가 척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p> <p>95-19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 - 경찰강제권에 대한 근거법의 정비를 중심으로 -</p> <p>95-20 음주운전 측정장치의 정도관리</p>	<p>96-01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 체제 연구</p> <p>96-02 경찰교육제도 개선 방안</p> <p>96-03 사용자 중심의 휴대용 경찰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p> <p>96-04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경찰조직의 변화</p> <p>96-05 진압장비 개선에 관한 연구</p> <p>96-06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p> <p>96-07 출입국 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p> <p>96-08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한 교통단속 체계의 구축</p> <p>96-09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연구</p> <p>96-10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p> <p>96-11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 제도</p> <p>〈치안논총 제 11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파출소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 • 민간방법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 방안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정책평가 • 경찰장비와 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 <p>〈치안논총 제 12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 • 경찰업무전문화를 위한 자격정책방안 연구 •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서별·기능별 장비보유 모델 개발
--	---

원고 응모 안내

1.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견, 관련학계의 논문 등을 모집합니다.
2. 치안현장에서 느낀 일선 경찰관의 조직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3. 치안연구소는 여러분 주장의 시책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 감사의 뜻으로 보내주시는 원고에 대한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치안연구소 안내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215호			
팩 스	경비 8-3178/일반(02)365-2223			
전 화	실	별	경 비	일 반
		치안행정 제1 연구실	8-3171	365-2240
		치안행정 제2 연구실	8-3179	365-4808
		범죄대책 연구실	8-3172	365-2240
		과학기술개발 연구실	8-3174	365-2241
		사회안정대책 연구실	8-3175	365-2241
		교통대책 연구실	8-3173	365-4808
		연구 운영 계	8-3176	365-2242

치안정책연구

발행일 : 1996년 9월

발행인 : 김 본 식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대한문화사

본지수록 내용은 치안연구소나 경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비매품>



치안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